

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1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주민에게 불편,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투명하게 구체화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통일촌농산물직판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요건중 “직판장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”를 “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”로 개선

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-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도 시 과 ☎ 940-4733
입안자	도 시 과 장	우 범 찬
	지역개발담당	박 승 순
	담 당 자	이 종 숙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기타 직판장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	제7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